

개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신상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Overview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Korean Translation

개요는 OECD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으로,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협력 개발 기구

머리말

정보기술이 경제 및 사회생활의 다양한 분야로 도입되고 전산화된 데이터 프로세싱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80년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국제적 정책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개발되어 글로벌 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OECD는 이에 따라 21세기 온라인 상에서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당 지침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할지에 많은 관심을 두어 왔다.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지침 (1980)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지침(이후 “사생활 보호 지침”)은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 존중, 개방 시장경제 등 OECD 회원국을 위한 3대 원칙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OECD 이사회의 권고안으로 채택되어 1980년 9월 23일 발효되었다.

사생활 보호 지침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과 관련하여 형성된 국제적 공감대를 대변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 지침에서 내놓은 원칙은 그 적용이 분명하고 탄력적이며 그 구성 또한 광범위하여 기술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원칙은 개인에 관한 데이터의 전산화 프로세싱이 이루어지는 모든 매체(사용자 컴퓨터부터 국가와 국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트워크), 모든 종류의 개인 정보 프로세싱(인사관리부터 고객 프로파일 편집 등), 모든 범주의 데이터(교통정보부터 콘텐츠 데이터까지, 지극히 평범한 것부터 가장 민감한 내용)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제정 이후 본 지침은 국가적 규제 차원에서 또는 자율규제를 위해 활용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지침

1 장 개요

정의

1. 본 지침을 위해:
 1. “정보관리담당자”는 개인 정보의 수집, 저장, 프로세스, 배포의 주체가 개인, 회사 또는 이를 대신하는 대리인인지 상관없이, 각국 법에 의거하여 개인 정보의 콘텐츠 및 사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
 2. “개인정보”는 대상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대상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리킨다;
 3.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은 개인 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침의 범위

2. 본 지침은 프로세스되는 방식, 활용되는 본질 및 맥락 등 때문에 사생활과 개인의 자유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공공분야 또는 민간분야에 있는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3. 본 지침이 다음의 사항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 a) 수집, 저장, 프로세스, 배포 등이 이루어진 본질 및 맥락 등에 따라 다른 보호조치를 다른 범주의 개인 정보에 적용하는 것;
 - b) 사생활과 개인의 자유에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개인 정보에 대해 본 지침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 또는
 - c) 개인정보의 자동 프로세싱에만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
4. 국가의 주권, 국가의 보안, 공공 정책 (이하 “공공 질서”) 등 본 지침의 2 장 및 3 장에 있는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가능한 한 적어야 하며,
 - b)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5. 연방국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본 지침의 준수가 해당 연방의 힘의 분할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6. 본 지침은 사생활 및 개인 자유의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로 보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장 국가별 적용의 기본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7.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적법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획득되어야 하며, 적절하다면 정보 대상자에게 정보 획득 사실을 알리거나 정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가 획득되어야 한다.

정보의 질 원칙

8. 개인정보는 그 사용 목적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근의 것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목적 명기의 원칙

9.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은 정보 수집 당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후 사용은 해당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또는 이러한 목적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명시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사용 제한의 원칙

10. 개인정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9 항에서 명시된 목적 이외에는 공개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a) 정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 b) 법에서 허락한 경우.

보안 장치의 원칙

11. 개인정보는 정보의 분실, 정당한 허가가 없는 액세스, 파괴, 사용, 수정, 공개 등과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보안 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개방의 원칙

1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발, 관행,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개방 정책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및 본질, 그 사용의 주 목적, 정보 관리담당자의 신원 및 거주지 등을 확립할 수 있는 수단이 언제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참여 원칙

13.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 a) 정보관리담당자 등을 통해서 그 정보관리 담당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권리;
 - b) 정보관리담당자와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권리
 - 1. 합리적인 시일 내에;
 - 2.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 3. 합리적인 방법으로;
 - 4. 알기 쉬운 형태로;
 - 4. 본 조항에 따라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및 이러한 거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5.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러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 관련 정보를 삭제, 수정, 완성, 교정하도록 하는 권리

책임의 원칙

14. 정보관리담당자는 위에 명시한 원칙의 실행관련 조치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장 국제적 적용의 기본원칙: 자유 이동 및 합법적 제한

14. 회원국은 타 회원국에서의 개인 정보의 프로세싱 및 재수출로 인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15. 회원국은 회원국을 통한 이동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이 차단되지 않고 안전하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 회원국은 타 회원국에서 본 지침을 아직 준수하고 있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재수출이 자국의 사생활 관련 입법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과 타 회원국간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은 자국의 사생활 관련 입법에서 정보의 본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거나 타 회원국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보호를 하지 않은 몇몇 범주의 개인 정보에 대해 제약을 할 수도 있다.

17. 회원국은 사생활과 개인 자유의 보호라는 명목 하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초과하여 개인 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법률, 정책, 관행 등을 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장 국가별 집행

18. 2장과 3장에서 정한 원칙을 자국 내에서 집행하고자 할 때 회원국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사생활 및 개인 자유의 보호를 위해 법, 행정 및 기타 절차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회원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a) 적절한 입법 채택;
- b) 행동 강령 등을 통한 자율 규제 격려 및 지원;
- c)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수단 제공;
- d) 2장 및 3장에서 정한 원칙의 집행 관련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제재 및 구제 수단 제공;
- e) 정보 대상자에 대해 불공평한 차별이 없도록 함.

5장 국제적 협력

19. 회원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지침에서 정한 원칙의 준수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을 타 회원국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 사생활 및 개인 자유의 보호 등을 위한 절차가 간단하며 본 지침을 준수하는 타 회원국의 절차 등과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 회원국은 다음을 활성화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i) 본 지침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 ii) 절차와 관련된 사항 혹은 조사시 상호 지원
21. 회원국은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관련 법을 지배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원칙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개요는, 영어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와 프랑스어(Lignes directrices de l'OCDE sur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et les flux transfrontières de données de caractère personnel) 표제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 2002, OECD

OECD 출판물과 개요는 www.oecd.org/bookshop/ 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Online Bookshop 홈페이지의 “Title search”박스에서 “Overview”를 입력하거나 해당 영어 표제를 입력하십시오.
(개요는 영어 출판물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본 개요는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의
OECD Rights and Translation 부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mail : rights@oecd.org / Fax : +33 1 45 24 13 91



© OECD, 2002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